

# PL 대책을 위한 안전성 평가 업무 안내

## ■ 안전성 평가 업무는?

PL대응책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로서, 전문시험연구기관이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완성제품을 시험·평가함으로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분석, 제거하여 제조사가 본질적인 설계·제조·표시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업무임.

## ■ 안전성 평가의 대상은?

전기밥솥, 전기스토브, 다리미 등 전기·전자관련 제품

## ■ 안전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 제품 안전설계에 대한 평가
- 전기안전성에 대한 평가
- 기계안전성에 대한 평가
- 화재(온도 및 발연) 안전성에 대한 평가
- System 안전성에 대한 평가

## ■ 안전성 평가의 수행단계는?

- 제1단계 : 제품의 안전레벨 설정(제품에 적용되는 법적인 안전기준 외에 업계 관행이나 동업 타사의 안전 Level, 동종·유사제품 안전대책·사고예방 등을 검토하여 설정)
- 제2단계 : 제품이 지닌 위험성 예측(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의 연령·지적수준, 사용환경·조건과 오조작·이상 사용의 경우나 제삼자가 접촉한 경우 등,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위험을 적출) 개발·설계의 진행에 따른 상세한

위험분석의 실시 신뢰성 관리기술에 의한 분석·평가 시험

- 제3단계 : 제품의 안전 확보(제품 자체의 안전대책으로서는 설계와 사용재료, 부품 등의 변경, 대체제품 안전대책의 구성 등을 검토) 제품자체의 안전설계에 의한 안전 확보(본질안전화·안전기구) 그 외 안전대책의 검토(안전장치의 부가) 경고 Label·취급설명서에 의한 경고·표시

## ■ 안전성 평가는 어느 경우에 받는가?

- PL대비책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소비자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 사항의 개량이나 부품의 변경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개선, 생산성향상 목적으로 공정을 변경한 것이 제품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시장의 불평내용이 안전성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관련 유사상품의 사고정보를 근거로 자사상품의 안전성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자사상품에 포함되었거나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 유해 등의 지적을 받았을 때 안전성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 안전성 평가로 얻는 기대 효과

- PL(제조물책임) 대책의 확실한 수립·시

**행을 통한 안전경영체제 구축**

-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의 공정능력 및 품질경영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방재시험연구원의 안전성 평가 실적은?**

- 가전제품 : 전기압력밥솥, 약탕기, 전기다리

**미 등 다수**

- 전자제품 : PC모니터, 프린터 등 다수
- 전선류 : 내화전선, 이동전선 등 다수
- 기타 전기 · 전자제품

**전기 · 전자제품 안전성평가 담당**

· 방재시험연구원

전기설비팀 (031) 889-9861~4

